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 11. 12. (월) 9:00~10:40
2. 장소 : 바롬인성교육관 103호 세미나실
3. 참석자(총 11명 중 8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한재준(의장), 김성호(부의장), 이준행, 박남춘
 - 나. 직원대표 : 김홍석
 - 다. 학생대표 : 원수빈
 - 라. 외 부 : 손인웅, 장유식
4. 불참자 : 정재훈, 이계원, 박에스더
5. 심의 안건
 -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 나. 대학원 학칙 개정(안)
 - 다. 직제 개편(안)
6. 기타 안건
 - 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1.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기획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중 제58조의2와 제58조의5의 비정년제 전임교원 관련 사항의 삭제에 대해 설명하다.

○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위원들이 승인하다.

2.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및 대학원학칙 개정(안) 심의

대학원장이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폐지에 따른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과 대학원학칙 개정(안)의 제·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정원 조정, 시행일, 폐지된 대학원에 대한 경과조치, 사전공고에 대해 설명하다.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에 따른 회신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졌는가.

<간서명> 의 장



- 학칙 개정(안) 회신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11월 7일에 공문으로 송부하였다.

○ 답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가.

- 현재까지 특별한 회신은 없었다.

○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이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 구조의 기준을 학부까지 적용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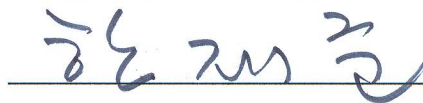
- 비용 문제로 집중이 되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에 원가분석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은 교수 1인당 12.5명의 학생을 유지하고 전용 교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서 학부에 비해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에서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특수치료전문대학원은 학부에 비해 국고기여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현재 구조적으로 매년 기금을 인출하는 상황에서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학부의 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원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다.

- 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영전문대학원(MBA), 신학전문대학원 등의 형태로써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설립 유지 기준 등 학교에서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설립시의 경쟁률에 비해 현재는 많은 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유지에 어려움이 크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본교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학원 학생의 입장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대학원 측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국내 유일의 전문대학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 학생들은 백퍼센트 만족하지 않을 것이나, 학생이 1명만 남더라도 학칙에서 보장된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다. 2015년에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폐지되었지만 2011학년도에 입학한 해당학과 1명의 학생에 대해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지도해 주셨으며 그 학생은 2018년 8월에 졸업하였

<간서명> 의 장



다.

○ 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및 대학원학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직제개편(안) 심의

기획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폐지에 대한 직제개편(안)을 설명하다.

○ 의장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기타 안건 :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경영기획팀장이 기타 안건으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5조(위촉)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입안서는 “구성원의 비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결정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비율에 대한 타대와의 비교 자료와 함께 2개의 안건으로 정리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 7조(임기),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제11조의2(회의록 공개), 제15조(개방임원 추천), 제19조(준용)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시행일은 2019년 3월 1일로 하다.

- 제7조(임기)는 각 구성단위의 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되므로 연임과 중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며, 2019학년도 평의위원회 구성에 추천되는 평의원부터 개정된 임기를 적용하기로 하다.

- 제11조의2(회의록 공개)는 2017학년도 제4차 대학평의위원회(2018.2.22.)에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6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 회의록 공개 기한의 범위가 없으므로 계속 공개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다.

<간서명> 의 장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18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의장이 10시 4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18년 11월 12일

의 장 한 재 준

(서명)

부 의 장 김 성 호

(서명)

평 의 원 이 준 행

(서명)

평 의 원 박 남 춘

(서명)

평 의 원 김 홍 석

(서명)

평 의 원 원 수 빈

(서명)

평 의 원 손 인 응

(서명)

평 의 원 장 유 식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

기 록 김 근 아

(서명)